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2년 4월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4.5%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고무·플라스틱, 영상·음향기기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식료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7%).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음식점, 협회·수리·개인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1%).

#### ◆ 2022년 4월 소비는 전월대비 0.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5%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4%) 판매가 늘었으나, 의약품 등 비내구재(-3.4%)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5%).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9.0%)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2.1%)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7.5%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1.9%).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3.8%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4월	3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1.2	1.6( 3.3)	-0.7( 4.5)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1.7	1.1( 3.7)	-3.3( 3.3)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1.7	1.2( 3.7)	-3.1( 3.7)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6	1.2(-5.2)	1.4( -1.1)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0.2	1.5( 3.7)	1.4( 5.1)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1.6	-0.7( 2.1)	-0.2( 0.5)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1.6	-2.2(-5.3)	-7.5(-11.9)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1	0.7( 4.8)	0.7( 5.4)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5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지동향』, 각호.

###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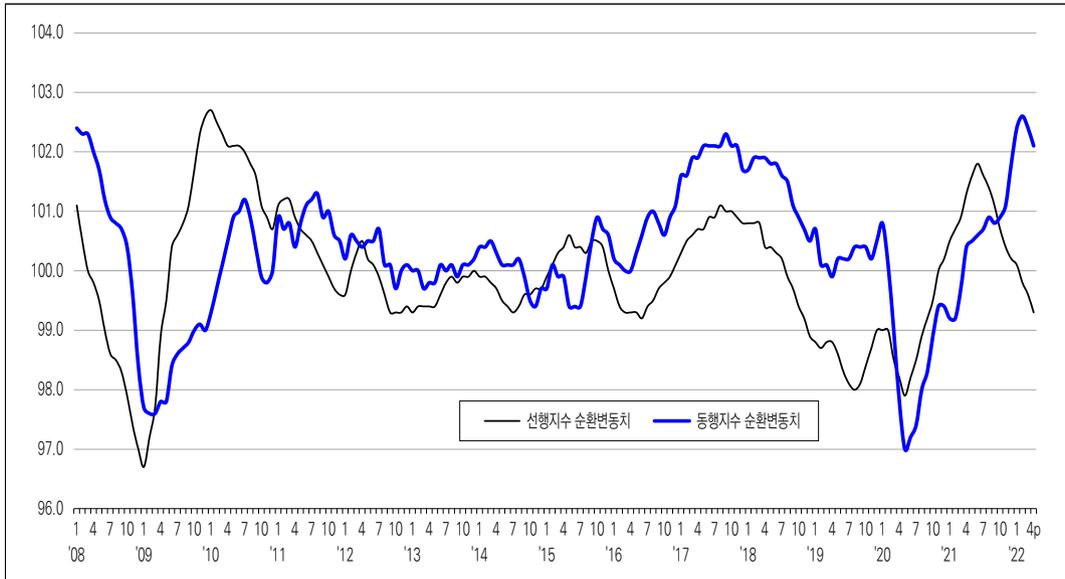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함(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2%), 음식·숙박(0.9%), 주택·수도·전기·연료(0.7%), 기타 상품·서비스(1.7%), 의류·신발(1.3%), 교통(0.5%), 교육(0.1%), 오락·문화(0.1%), 주류·담배(0.2%) 등은 상승하고, 통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은 변동이 없었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6% 상승하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대비 1.0% 상승함.

◆ 2022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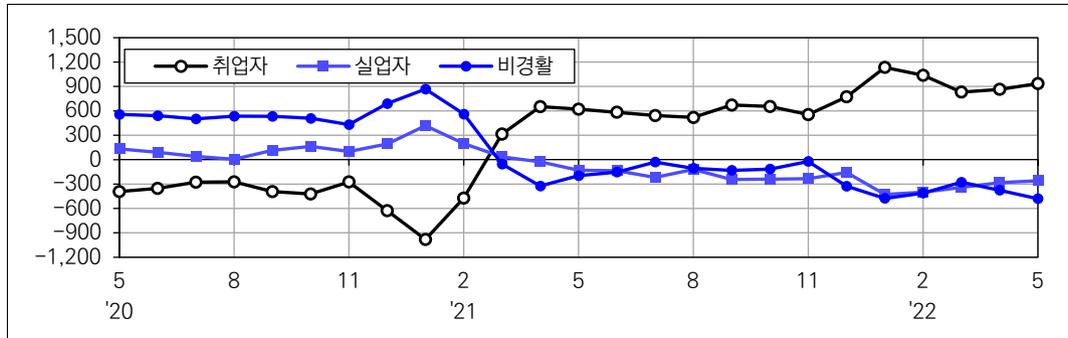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 2022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3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전월대비<sup>1)</sup> 14만 1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5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됨. 서비스업은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 전환된 반면 사업시설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5월은 40세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40대는 도소매에서 증가 전환되고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50대는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및 협회단체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주로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5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및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및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일시휴직자) 5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 전환(4월 +5만 4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5만 4천 명 감소함.
- (실업자) 5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5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4월 -28만 3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3만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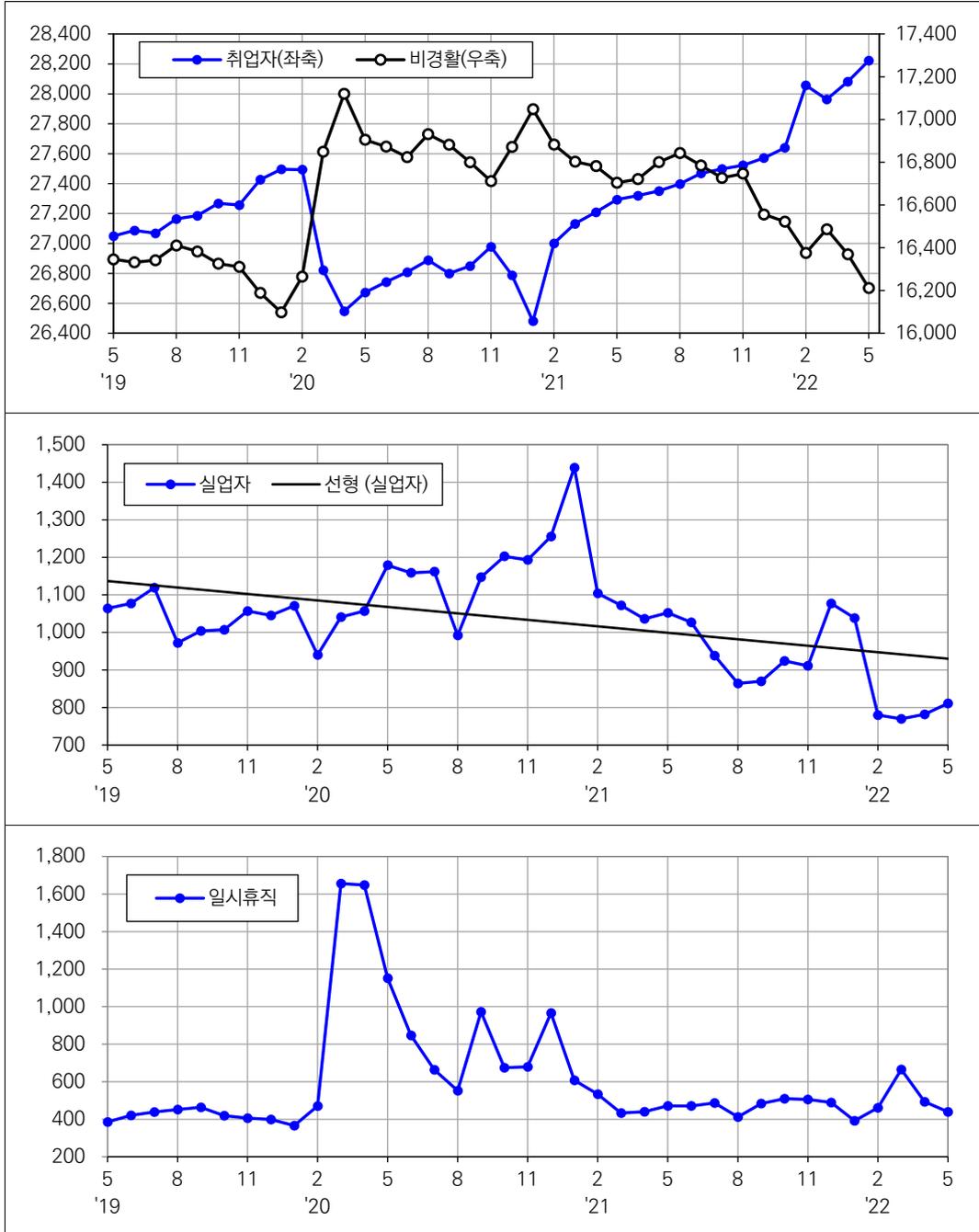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5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4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20~3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자 감소폭은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40대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증가 전환 및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50대는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및 협회단체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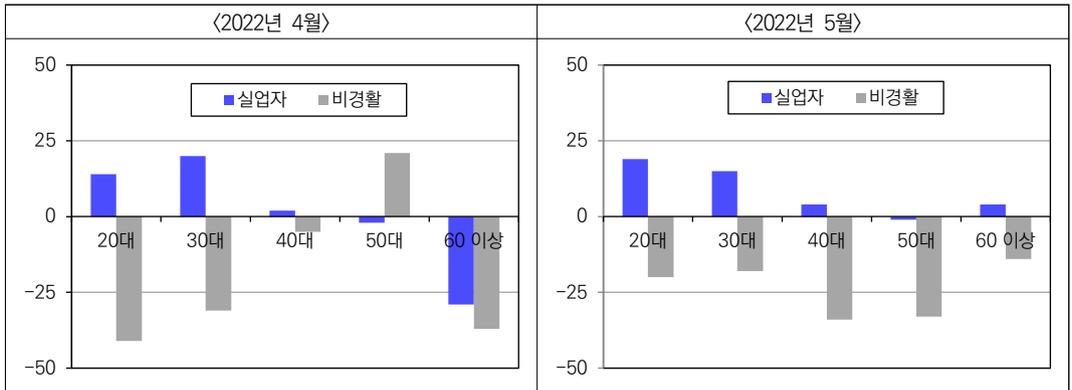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3	-5	11	( 12)	174	191	185	(-15)	43	33	6	( -8)
실업자	-3	-3	-8	( -1)	-115	-100	-74	( 19)	-79	-33	-4	( 15)
비경황	-90	-73	-78	(-16)	-162	-207	-241	(-20)	-98	-132	-132	(-18)
실업률	-1.4	-1.3	-3.6	(-1.0)	-3.0	-2.6	-2.0	(0.5)	-1.5	-0.6	-0.1	(0.2)
고용률	0.4	0.0	0.8	(0.6)	3.6	4.0	4.1	(-0.1)	2.1	1.9	1.5	(0.0)
	40대				50대				60세 이상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21	15	36	( 24)	258	208	239	( 38)	331	424	459	( 55)
실업자	-40	-35	-47	( 4)	-84	-61	-75	( -1)	-22	-51	-51	( 4)
비경황	-54	-52	-60	(-34)	-143	-108	-120	(-33)	270	196	150	(-14)
실업률	-0.6	-0.5	-0.8	(0.0)	-1.4	-1.0	-1.2	(-0.1)	-0.5	-1.1	-1.1	(0.1)
고용률	0.9	0.8	1.2	(0.4)	2.7	2.1	2.4	(0.4)	0.6	1.4	1.6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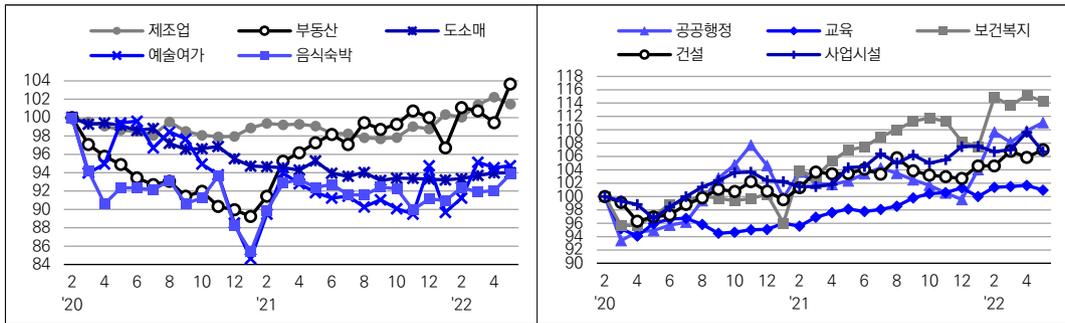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교육, 보건복지, 사업시설이 감소함. 도소매, 예술여가는 정체된 반면 부동산, 음식숙박, 공공행정, 건설은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5	68	122	-95	-3	35	-63	-3.9
광업	1	0	-1	-1	0	-1	-2	-15.4
제조업	100	132	107	61	36	-34	63	1.4
전기·가스·증기	2	12	11	-4	3	2	1	1.3
수도·원료재생	8	-11	-12	-5	-14	-1	-20	-11.4
건설업	64	48	72	45	-19	23	49	2.3
도매 및 소매업	-32	-11	-45	12	10	1	23	0.7
운수 및 창고업	81	87	120	-32	18	42	28	1.7
숙박 및 음식점업	-20	-27	34	-11	3	41	33	1.6
정보통신업	81	89	93	-14	23	4	13	1.3
금융 및 보험업	-25	-54	-39	-16	-22	12	-26	-3.3
부동산업	30	19	35	-2	-7	23	14	2.5
전문·과학·기술	72	50	69	-13	-10	19	-4	-0.3
사업시설관리지원	74	104	32	4	35	-39	0	0.0
공공행정·사회보장	68	91	99	-17	19	14	16	1.3
교육서비스업	86	75	55	2	3	-13	-8	-0.4
보건 및 사회복지	251	230	178	-30	35	-20	-15	-0.6
예술·스포츠·여가	6	9	16	20	-3	1	18	3.8
협회·단체·수리·기타	-30	-25	4	-3	-2	24	19	1.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7	-18	-13	-1	-2	3	0	0.0
국제 및 외국기관	-1	-2	-1	1	-3	1	-1	-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5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및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음식숙박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협회단체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건설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에서 증가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811	929	900	134	103	36	272	1.8
임시직	166	48	79	-86	-73	63	-96	-2.0
일용직	-172	-117	-91	30	24	14	68	6.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	39	65	-12	26	10	25	1.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5	20	45	-84	0	43	-41	-1.0
무급가족종사자	-33	-53	-64	-17	-18	4	-31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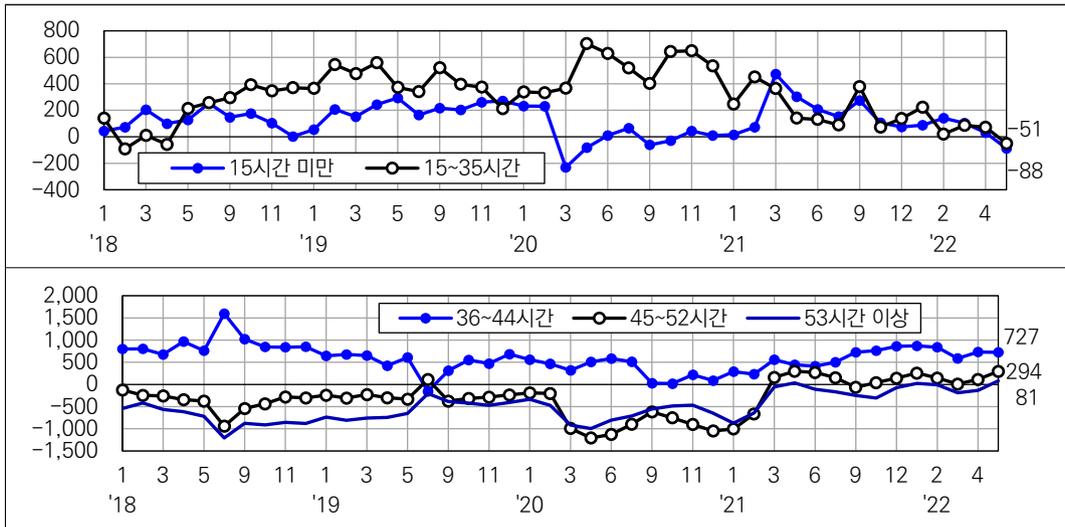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0	1	8	4	0	14	-9	-1	-2	9	9	18	31	64	74
제조업	92	136	115	11	6	15	-4	8	-2	12	11	18	-9	-20	-23
건설업	110	96	105	30	25	20	-82	-76	-61	10	11	2	2	-3	16
도소매	70	115	73	-37	-49	-32	-15	-15	-16	0	7	9	-19	-35	-45
운수창고	34	46	47	13	0	19	-11	-9	-8	2	1	8	44	47	55
음식숙박	-17	4	48	26	15	21	-35	-40	-28	-20	-24	-9	15	9	3
정보통신	79	90	88	10	1	3	1	0	-1	1	1	-1	-9	-4	3
금융보험	-22	-35	-35	4	-4	0	-2	-2	0	0	-2	0	-4	-10	-4
부동산	21	21	29	7	-3	8	-2	-4	-2	2	5	4	-1	-2	-5
전문과학기술	96	93	87	-20	-38	-25	0	0	-1	-5	-1	3	3	-2	7
사업관리지원	53	40	10	13	25	12	-1	30	4	0	1	3	6	5	-1
공공행정	72	88	97	-1	5	0	-3	-2	3	0	0	0	0	0	0
교육서비스	52	63	52	27	9	-1	4	3	2	3	-2	-1	-4	-1	3
보건복지	166	145	138	82	75	32	-4	-1	4	9	10	3	-2	2	4
예술스포츠	-13	8	2	2	-14	-3	4	-1	3	4	5	1	12	15	16
협회단체	18	23	42	6	5	1	-13	-4	19	6	5	5	-38	-42	-53
가구 내 고용	-1	0	-1	-18	-19	-9	0	0	-3	0	0	0	2	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5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증가함.
  - 36~52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35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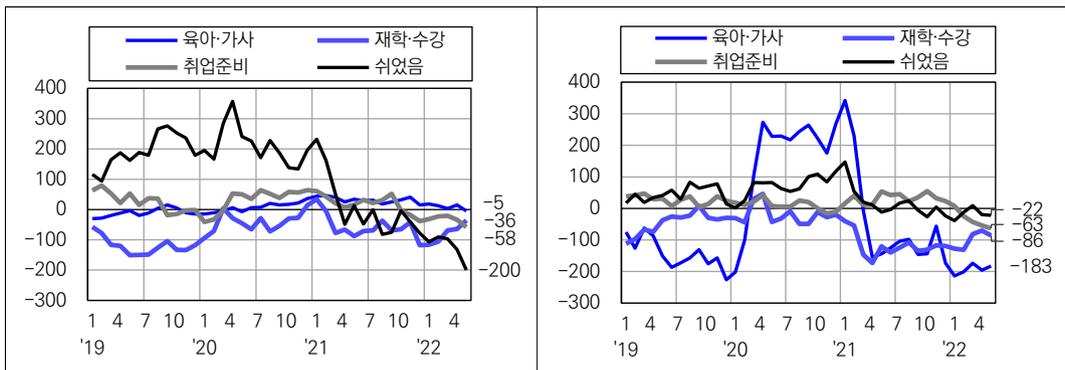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8만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4월 -37만 6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21만 3천 명으로 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여성은 -26만 7천 명으로 재학·수강 및 취업준비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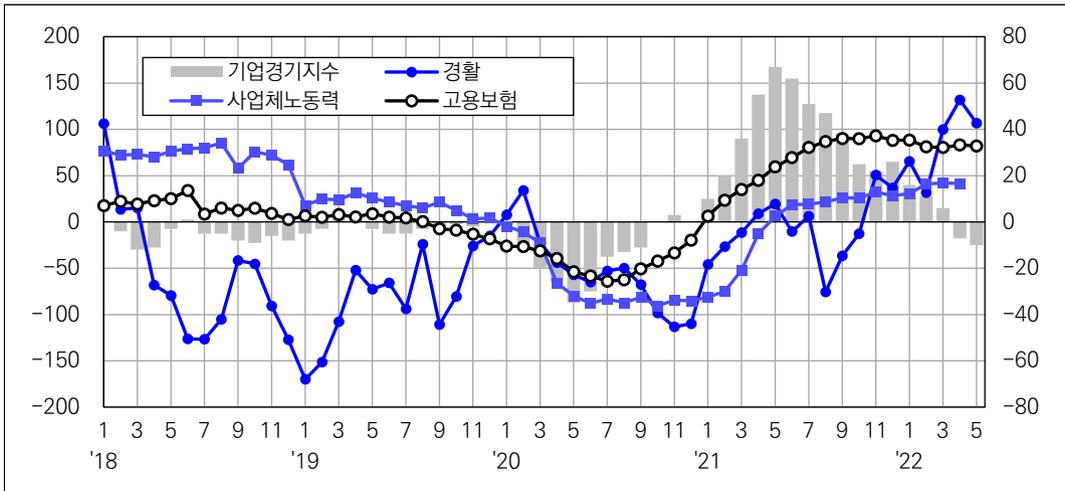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22년 5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의 증가세는 이어짐. 피보험자는 의료정밀 및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3만 4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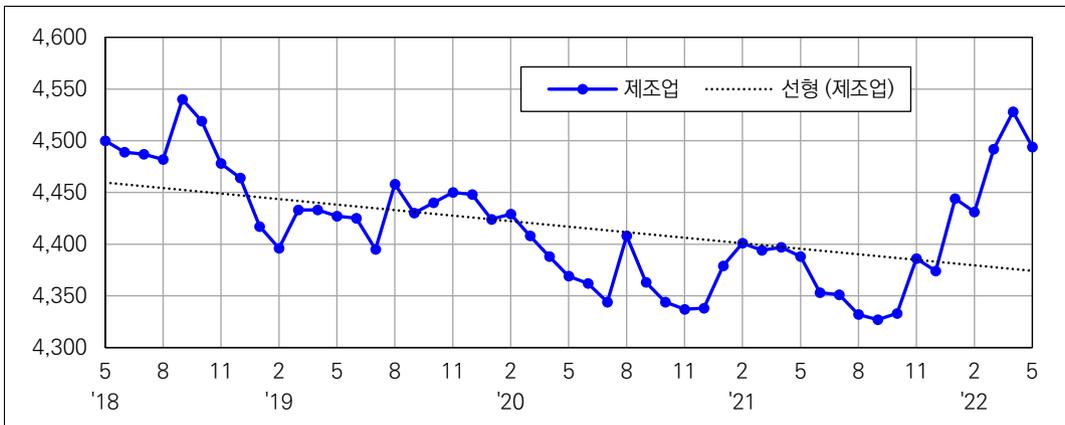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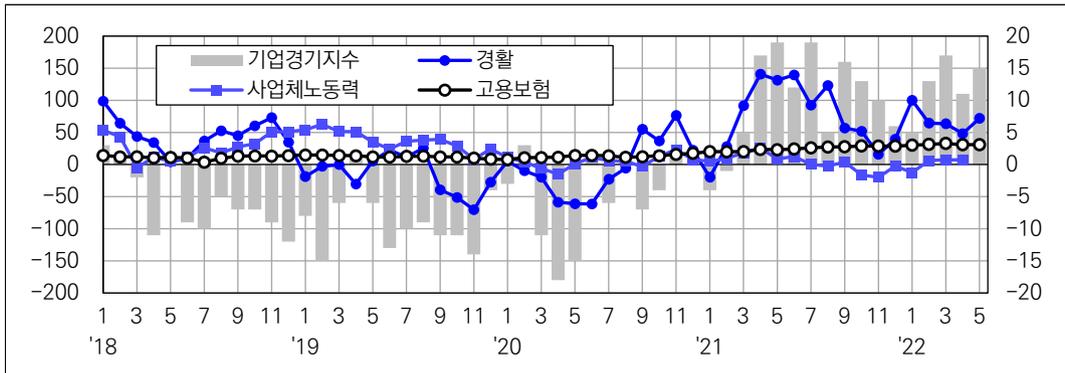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5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7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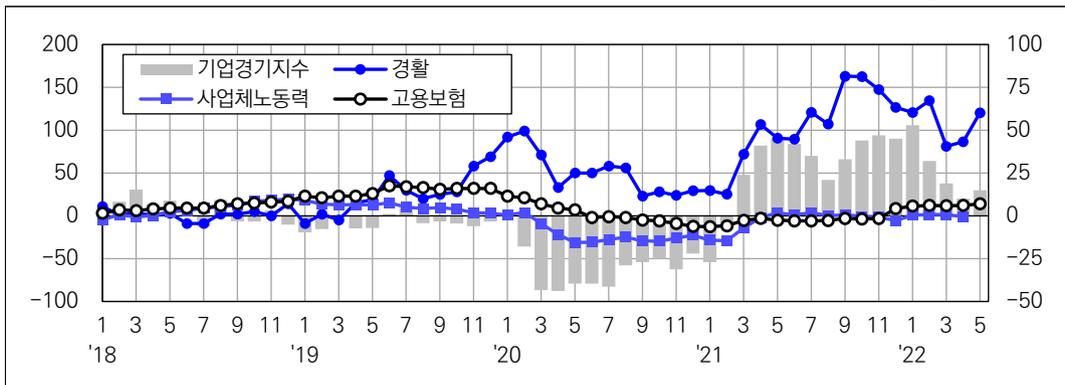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5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62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운수창고) 경찰 및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도 증가폭이 확대됨.
- (음식숙박) 경찰 취업자가 3만 4천 명 증가하며 증가 전환됨. 생산지수 증가폭도 확대됨.
- (사업시설) 경찰 취업자는 작년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사업체노동력 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도 증가폭이 확대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임.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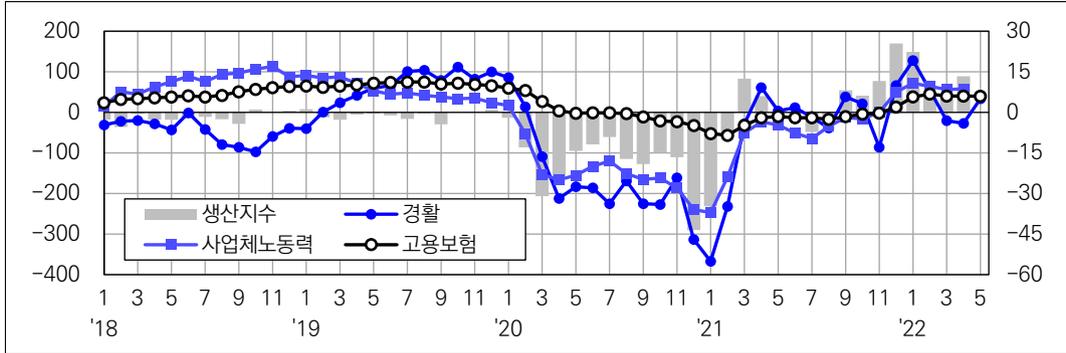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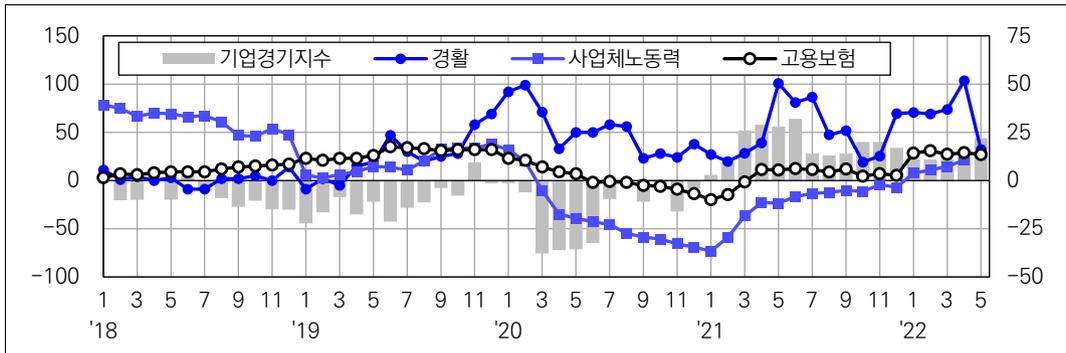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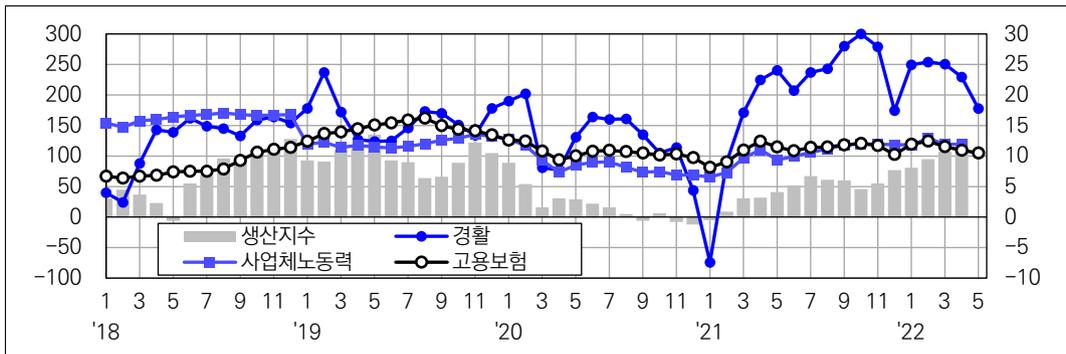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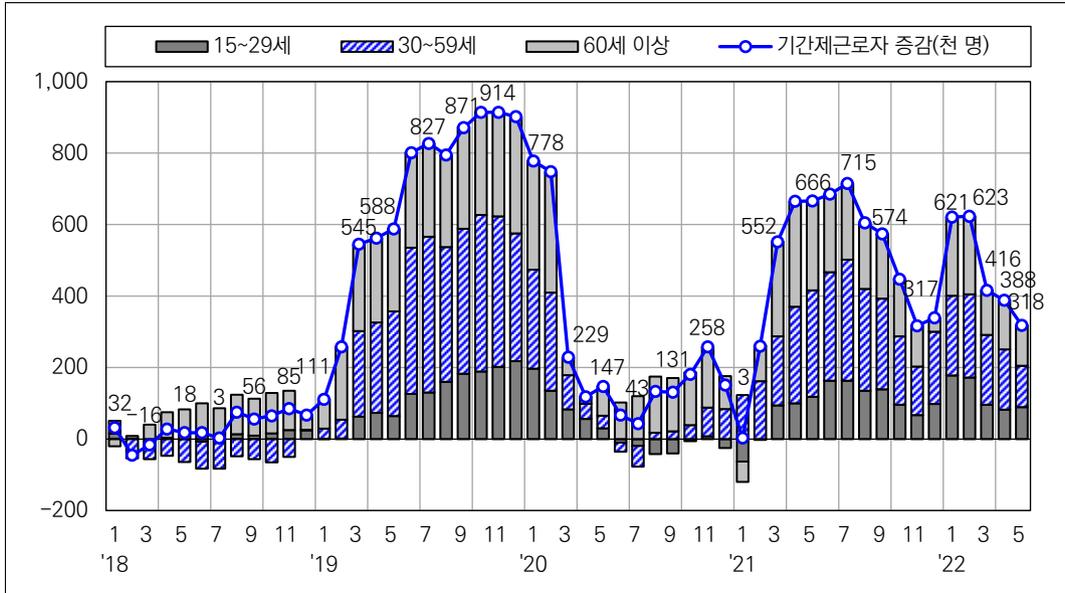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5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3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2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 2022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3만 7천 원(+6.4%)임.
  - 2022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05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4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각각 4.1%, 8.0% 증가한 가운데 특별급여는 25.5% 증가함.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는 자동차·반도체,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확대 지급된 영향임.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3월	3월	1~3월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 5.3)	3,490 ( 3.4)	3,527 ( 1.1)	3,689 ( 4.6)	3,810 ( 4.2)	3,606 ( 3.8)	4,084 ( 7.2)	3,837 ( 6.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 5.1)	3,702 ( 3.1)	3,719 ( 0.4)	3,893 ( 4.7)	4,019 ( 4.2)	4,324 ( 7.6)	4,050 ( 6.7)	
	정액급여	2,891 ( 4.6)	3,010 ( 4.1)	3,077 ( 2.2)	3,181 ( 3.4)	3,160 ( 2.7)	3,152 ( 3.1)	3,288 ( 4.1)	
	초과급여	197 ( 3.7)	202 ( 2.7)	200 (-0.9)	208 ( 3.7)	200 ( 1.2)	197 ( 3.8)	212 ( 5.7)	223 ( 8.0)
	특별급여	504 ( 8.5)	490 (-2.8)	441 (-9.9)	504 (14.3)	659 (13.2)	437 (13.8)	824 (25.0)	548 (25.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 5.5)	1,517 ( 6.2)	1,636 ( 7.8)	1,700 ( 3.9)	1,660 ( 5.1)	1,694 ( 7.5)	1,716 ( 3.3)	1,745 ( 3.0)	
소비자물가지수	104.5 ( 1.5)	105.1 ( 0.4)	105.7 ( 0.5)	104.0 ( 2.5)	101.8 ( 1.4)	101.8 ( 1.9)	106.1 ( 3.8)	106.1 ( 4.1)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7	1.9	3.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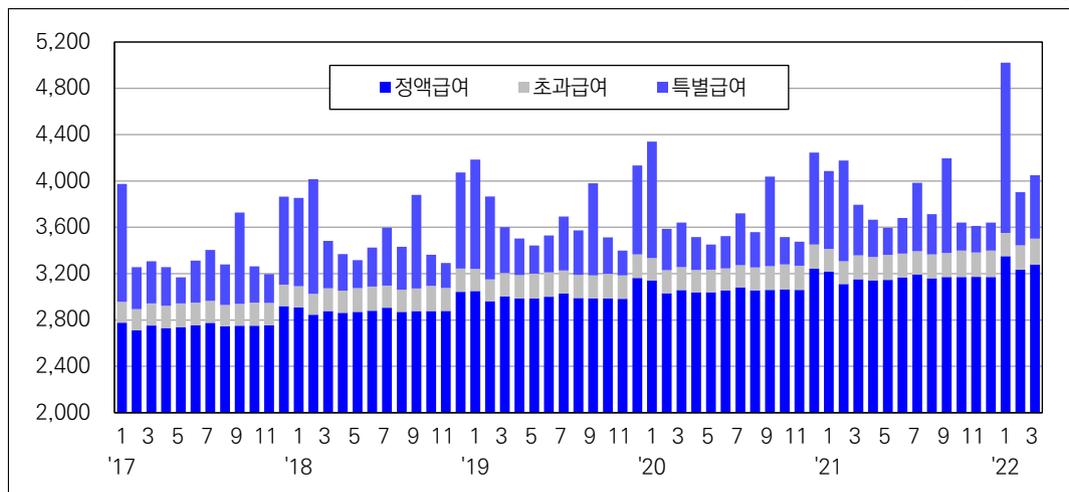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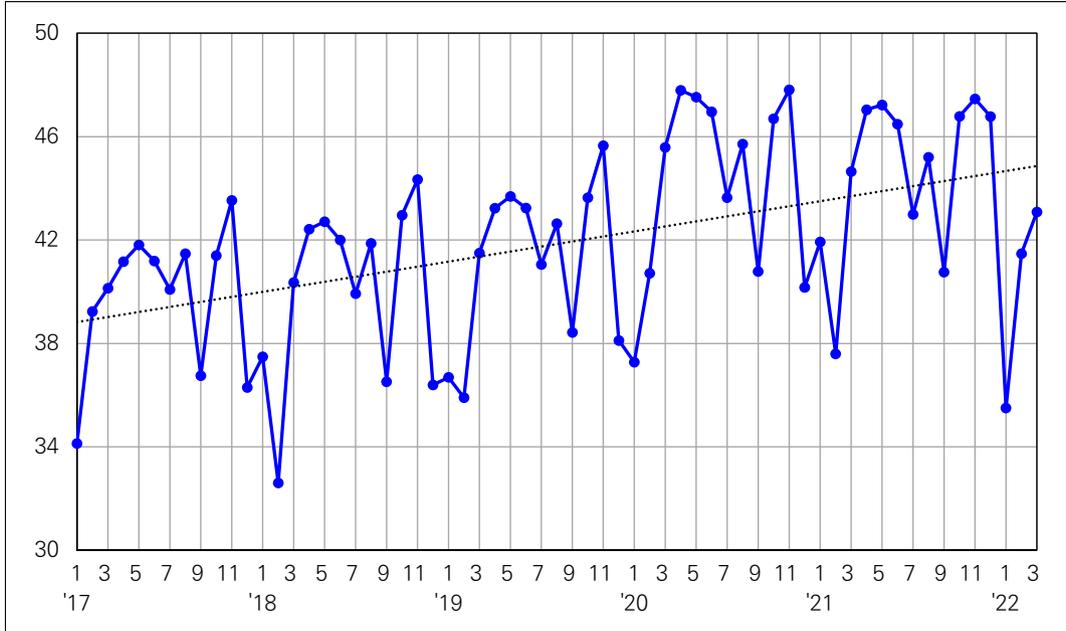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3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3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0%, 10.8% 증가함.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2%, 11.1% 증가함.
  -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는 자동차·반도체 관련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임.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7.3%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 1.7)	3,316 ( 3.8)	3,352 ( 3.3)	3,264 ( 3.5)	3,517 ( 4.9)	3,426 ( 5.0)
	상용임금총액	3,377 ( 1.2)	3,510 ( 3.9)	3,545 ( 3.3)	3,445 ( 4.0)	3,731 ( 5.3)	3,626 ( 5.2)
	정액급여	2,915 ( 2.6)	3,012 ( 3.4)	2,986 ( 2.8)	2,975 ( 3.1)	3,104 ( 3.9)	3,092 ( 4.0)
	초과급여	171 ( -2.4)	176 ( 2.9)	170 ( 0.2)	177 ( 3.3)	180 ( 5.8)	192 ( 8.3)
	특별급여	292 ( -9.4)	322 (10.4)	388 ( 8.8)	294 (14.8)	447 (15.1)	342 (16.4)
	비상용임금총액	1,615 ( 7.3)	1,671 ( 3.4)	1,629 ( 4.8)	1,673 ( 2.0)	1,671 ( 2.6)	1,714 ( 2.5)
대규모	소 계	5,242 ( -2.1)	5,582 ( 6.5)	6,132 ( 5.8)	5,337 ( 4.3)	6,944 (13.2)	5,911 (10.8)
	상용임금총액	5,335 ( -2.8)	5,687 ( 6.6)	6,242 ( 5.8)	5,432 ( 4.4)	7,095 (13.7)	6,036 (11.1)
	정액급여	3,847 ( 0.1)	3,973 ( 3.3)	3,971 ( 1.8)	3,984 ( 2.6)	4,149 ( 4.5)	4,157 ( 4.4)
	초과급여	340 ( 1.4)	357 ( 5.1)	344 ( 2.4)	343 ( 4.5)	362 ( 5.4)	368 ( 7.3)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927 (15.7)	1,105 (11.4)	2,583 (34.1)	1,511 (36.7)
	비상용임금총액	2,029 ( 18.5)	2,214 ( 9.1)	2,248 ( 9.4)	2,084 ( 3.7)	2,436 ( 8.4)	2,236 (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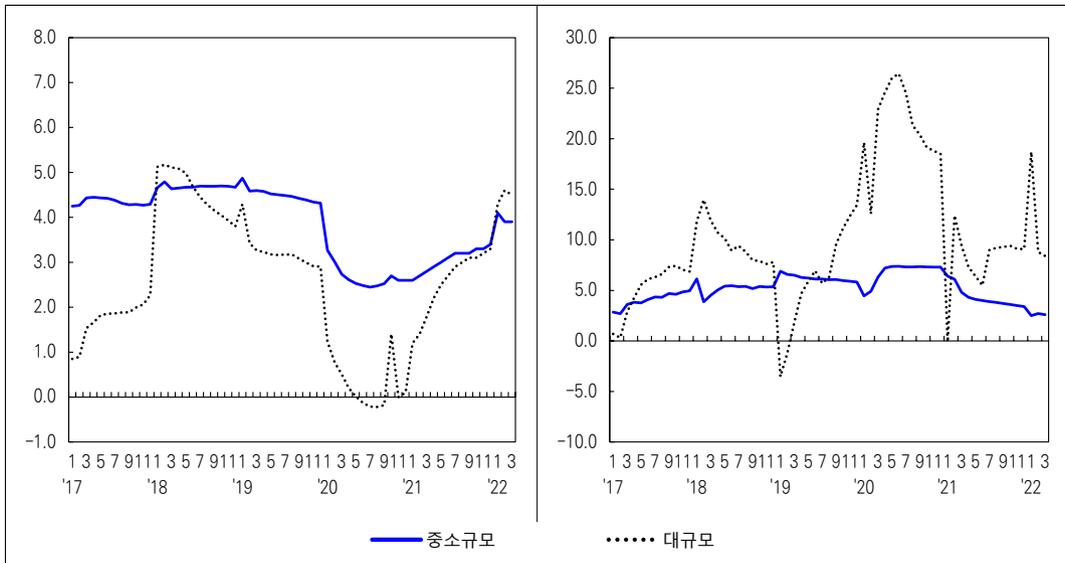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3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보통신업(-6.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3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2.5%), 운수 및 창고업(11.1%), 도매 및 소매업(9.2%) 등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도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하였음.
- 2022년 3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77만 6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51만 4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4만 6천 원) 순으로 임금총액이 높은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195만 1천 원)의 임금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3,527	3,689 ( 4.6)	3,810 ( 4.2)	3,606 ( 3.8)	4,084 ( 7.2)	3,837 ( 6.4)
광업	4,325	4,415 ( 2.1)	4,407 ( 2.5)	4,345 ( 2.2)	4,599 ( 4.4)	4,499 ( 3.5)
제조업	3,990	4,239 ( 6.2)	4,464 ( 5.7)	3,937 ( 3.1)	4,946(10.8)	4,255 ( 8.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 0.3)	6,704 ( 2.0)	8,305 ( 2.7)	6,816 ( 1.7)	8,514 ( 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 5.3)	4,040 ( 6.0)	4,045 ( 7.1)	4,110 ( 1.7)	4,051 ( 0.1)
건설업	3,032	3,106 ( 2.4)	3,107 ( 0.5)	3,022 ( 0.8)	3,240 ( 4.3)	3,165 ( 4.7)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 3.7)	3,632 ( 3.0)	3,491 ( 3.7)	3,853 ( 6.1)	3,814 ( 9.2)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 7.5)	3,721 ( 5.4)	3,411 ( 4.9)	3,963 ( 6.5)	3,791 (11.1)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 1.4)	1,895(-0.9)	1,864 ( 2.0)	1,970 ( 4.0)	1,951 ( 4.7)
정보통신업	4,613	4,796 ( 4.0)	5,237 ( 6.2)	5,322(10.9)	5,426 ( 3.6)	4,995(-6.1)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 6.7)	7,976(11.0)	7,800(12.3)	8,902(11.6)	8,776(12.5)
부동산업	2,848	2,954 ( 3.7)	2,981 ( 4.2)	2,893 ( 4.7)	3,214 ( 7.8)	3,139 ( 8.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 4.8)	5,080 ( 1.5)	4,837 ( 2.2)	5,529 ( 8.8)	5,246 ( 8.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 3.4)	2,497 ( 2.9)	2,450 ( 2.8)	2,602 ( 4.2)	2,536 ( 3.5)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578(-1.3)	3,424(-1.8)	3,664 ( 2.4)	3,555 ( 3.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 2.5)	3,011 ( 1.4)	2,918 ( 1.8)	3,134 ( 4.1)	3,033 ( 4.0)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 4.2)	3,013 ( 1.6)	2,892(-1.3)	3,138 ( 4.2)	2,940 ( 1.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 5.4)	2,729 ( 6.0)	2,681 ( 6.1)	2,873 ( 5.3)	2,765 ( 3.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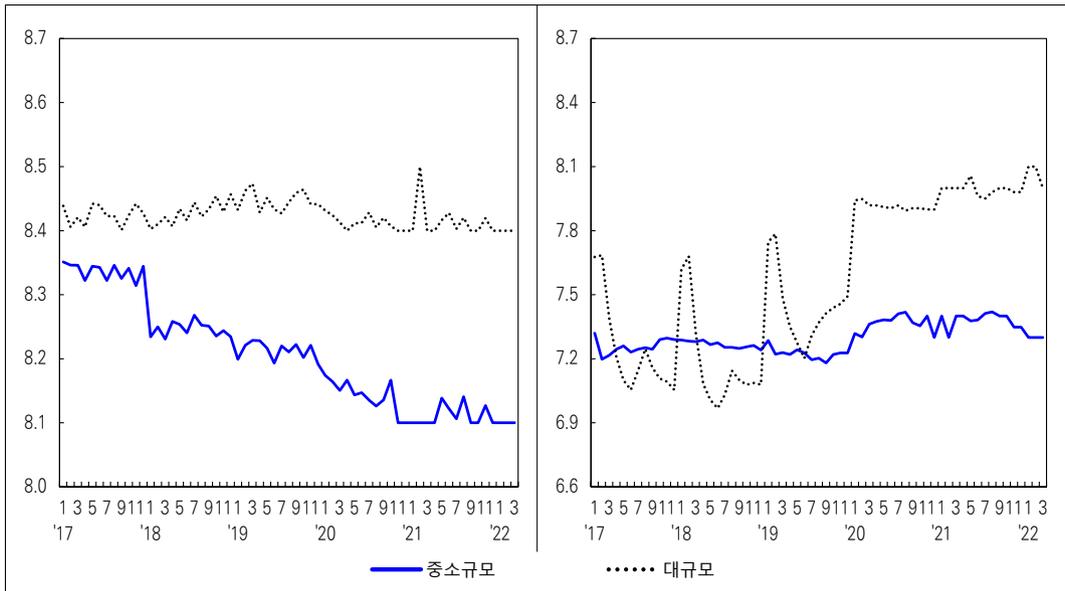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3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 2022년 3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7시간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3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가 1일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사업시설·지원·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0.3시간, 16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9시간, 10.4시간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 0.1)	155.7(-3.0)	168.2( 0.2)	152.6(-2.0)	160.3(-4.7)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 0.1)	162.5(-3.2)	176.2( 0.4)	159.3(-2.0)	167.8(-4.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 0.2)	154.9(-3.2)	168.3( 0.4)	151.7(-2.1)	159.7(-5.1)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6(-1.3)	7.9( 0.0)	7.6( 0.0)	8.1( 2.5)
	비상용 근로시간	96.1( 0.7)	97.4( 1.4)	94.7( 1.3)	97.7( 1.2)	94.6(-0.1)	96.4(-1.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59.3(-2.8)	171.2(-0.5)	154.1(-3.3)	160.8(-6.1)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0.2(-2.9)	172.4(-0.3)	155.1(-3.2)	162.1(-6.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49.2(-3.1)	161.5(-0.5)	144.2(-3.4)	150.8(-6.6)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 1.8)	10.9(-0.9)	10.9( 1.9)	11.0( 0.9)	11.3( 3.7)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 2.2)	128.3( 0.6)	130.3(-3.3)	122.7(-4.4)	121.5(-6.8)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3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22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79.9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8.0시간), 제조업(174.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6시간)임.
- 월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 금융 및 보험업(-6.9%), 광업(-6.3%) 등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160.6	160.7( 0.1)	156.3(-3.0)	168.7( 0.1)	152.8(-2.2)	160.4(-4.9)
광업	181.2	179.9(-0.7)	176.2(-1.4)	191.9( 1.1)	168.5(-4.4)	179.9(-6.3)
제조업	172.7	173.5( 0.5)	169.5(-2.8)	183.6(-0.8)	165.0(-2.7)	174.0(-5.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57.1(-2.7)	157.1(-3.3)	152.2(-3.1)	145.3(-7.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 0.2)	172.7(-1.3)	185.0( 0.5)	169.3(-2.0)	178.0(-3.8)
건설업	136.9	135.9(-0.7)	132.5(-3.8)	140.7(-2.5)	129.9(-2.0)	135.6(-3.6)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 0.0)	159.3(-2.6)	171.4( 0.4)	156.5(-1.8)	164.4(-4.1)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 0.8)	155.4(-3.0)	166.5( 2.2)	154.3(-0.7)	160.9(-3.4)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2.2(-5.5)	152.1( 1.4)	140.5(-1.2)	147.0(-3.4)
정보통신업	163.8	164.1( 0.2)	159.4(-3.2)	172.8(-1.0)	156.2(-2.0)	164.6(-4.7)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8.6(-2.8)	173.0(-0.1)	152.8(-3.7)	161.0(-6.9)
부동산업	173.2	171.8(-0.8)	168.0(-2.4)	179.8( 0.3)	163.3(-2.8)	171.3(-4.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57.5(-3.3)	171.0(-1.3)	153.7(-2.4)	161.9(-5.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 0.2)	157.9(-2.8)	170.4( 0.8)	154.7(-2.0)	161.8(-5.0)
교육서비스업	136.6	137.2( 0.4)	132.2(-0.5)	145.3( 5.4)	130.0(-1.7)	136.4(-6.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3.2(-3.0)	165.9( 1.4)	149.4(-2.5)	156.6(-5.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 2.0)	143.0(-4.2)	159.2( 4.9)	144.7( 1.2)	152.8(-4.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 1.3)	157.4(-1.1)	169.0( 0.6)	155.0(-1.5)	161.4(-4.5)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7건
  - －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0건)보다 7건 많은 수치임.
- 2022년 5월 조정성립률 11.1%
  - － 5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보다 11.1% 높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5	17	13	1	0	1	8	0	8	0	4	8	11.1%
2021. 5	10	6	0	0	0	6	1	5	0	0	7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중재사건

- 202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5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와 같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2건임.

〈표 2〉 2021년, 2022년 5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5.	1	2	2	0	0	3
2021. 5.	1	2	0	0	2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86건
  -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66건)보다 20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9.2%(5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0.8%(121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5.	186	171	39	11	99	4	9	9	467
2021. 5.	166	170	35	19	74	12	16	14	49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7건
  - 5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4.3%(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5.7%(6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5.	7	7	1	0	5	0	1	0	11
2021. 5.	4	9	1	0	5	1	2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sup>2)</sup>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298건
  -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51건)보다 47건 많은 수치임.
  - 4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173건)보다 29건 많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4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2. 4	298	202	53	53	34	62
2021. 4	251	173	47	48	23	5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 화물연대 · 국토부 협상 타결

-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차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음.
-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해 왔음.
-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특히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되기도 했음.
-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고, 기존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었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음.
- 이 외에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음.
-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의 교섭과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했음.

###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검증위 “12개 중 2개만 이행”

- 6월 16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위원장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중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 해당 사회적 합의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4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이후, 2018

- 년 1월 제빵기사들이 가입한 양대노총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가맹점주협의회, 에스피씨까지 참여해 체결됐음.
- 검증위는 임금 관련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것은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 주주 구성(파리크라상이 피비파트너즈 지분 51% 이상 보유)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에스피씨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유예 요청이 그 두 가지임.
  - 이 밖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협의체 운영 등 5개 항목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 마련 등 3개 항목은 일부만 이행됐다고 평가했음.

〈표 6〉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검증 중간발표 결과

합의 내용	이행여부
1. 제빵기사 고용 자회사(현 PB파트너즈) 지분 파리크라상이 51% 이상 보유	○
2. 자회사 대표이사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 등기이사에서 협력업체 대표 이사 배제	△
3.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자회사 근로계약서 신규체결	×
4-1 처우·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양대노총 노조, 가맹점주 참여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
4-2 제빵기사 급여 3년 이내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수준 적용	(×)*
5.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시정, 불법파견 논란 유감 표명	×
6. 제빵기사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소송비용 파리크라상 지급	△
7.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임금 해결 노력	(△)*
8. 노조·가맹점주협의회·파리크라상, 자회사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
9. 양대노총 노조, 파리크라상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사법조치 유예 신청	○
10. 노사 참여 '상생화합의 장' 마련	△
11. 합의 주체, 합의의 원만한 이행 지원	×

주 : \* 괄호는 검증진행 중 중간평가 한 결과.  
 자료 :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

### ◆ 보상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 B연구원은 2008년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09년부터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도입했음.
-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였음. 도입 후 만 55세 이상 직원들의 월 급여는 평가 등급에 따라 93만~283만 원가량 줄었음. 51~55세 미만 직원들보다 업무평가가 좋았음에도 급여는 더 적었음.

- A씨도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 그는 명예퇴직을 한 뒤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B연구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음.
- 1·2·3심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우선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급여나 처우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조항이 강행규정(지켜야만 하는 규정)이라고 전제했음.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 이어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비록 노사합의로 도입됐지만 이 강행규정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령자가 고용상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임.
-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정년 연장·보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예정한다"고 했음. 그런데 B연구원의 경우 정년은 61세로 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연장되지 않았고, 재고용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없었다고 했음. 임금이 줄어든 대신 업무량이나 강도가 줄었다는 증거도 없고, 평가 방법이 완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별충할 만한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었다는 것임.

#### ◆ 현재, 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합헌

-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음.
-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음.
- A씨 등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휴일근로(특근)를 3차례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항소심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음.
-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음.
- 현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 어떤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춰 불가피한 것으로 그런 사정만으로 형법규범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음.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대부분의 노동조합법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대상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4개월간 25명 목숨 잃어

- 6월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명보다 18명이나 늘었음.
-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의 19.3%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4만 2,865명이 일하다 사고를 당했음.
- 노동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음. 점검 대상은 △유자격자 운전 △위험장소 출입금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등임.
- 노동부는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와 공유도 강조했다음.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산재보상 쉬워진다

-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날 여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음,
-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임.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그간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음.

### ◆ 가사근로자법 시행

- 6월 15일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가사노동자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
- 지금까지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던 직업소개소와 플랫폼 업체들 모두 기관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님. 희망 업체만 인증을 받게 됨.
- 노동부는 기관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한시 지원하기로 했음.
- 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음.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임.

###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내달부터 전국 6곳 시범시행

- 6월 15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장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음.
-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인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임.
-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함.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임.
- 천안시와 서울시 종로구 역시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임.
- 창원시와 순천시는 노동자가 입원하는 경우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함.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임.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노동자임. 이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을 지원받게 됨.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 ◆ 코로나로 회식 사라지니 직장 내 성희롱 줄어

- 6월 7일 여성가족부는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기관(770개)과 민간사업체(1,760개) 직원·업무담당자 1만 7,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 조사 결과, 응답자 4.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음. 2018년 8.1%에 비하면 3.3%포인트 감소했음. 특히 공공기관은 2018년 16.8%였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지난해 7.4%로 9.4%포인트나 낮아졌음. 민간업체는 4.3%임.
-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된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바뀐 것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음.
- 성희롱 발생장소는 2018년 조사에서 1위가 회식(43.7%), 2위가 사무실(36.8%)인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무실(41.8%), 회식(31.5%)으로 바뀌었음.
- 코로나19로 회식·단체대회가 감소했다는 응답도 90.4%였음. 이번 조사는 '온라인'(단톡방·SNS·메신저 등)을 성희롱 발생 장소 문항에 새로 포함했는데 피해자 4.7%가 이를 지목했음.
- 성희롱 가해자는 남성이 80.2%, 여성이 15.3%였음. 가해자의 58.4%는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였음. 이어 동급자가 24%를 차지했음. 외부인(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 비율도 7.3%로 적지 않았음.
- 성희롱 가해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5%에 그쳤음. 33%는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응답이 43.6%였음.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는 10명 중 7명이 "참고 넘겼다"고 했음.
- 성희롱 피해자가 공식적인 대처에 나설 경우 기관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92.6%로 2018년에 비해 소폭 높아졌음. 주로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와 상담·휴가·업무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등이 실시됐음.
- 성희롱 피해자 20.7%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55.7%)와 동료(40.4%)였음. 2차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업무집중도·근로의욕 저하 등을 경험했음.

### ◆ 대기업 27% 거리 두기 해제 후 재택근무 중단

- 6월 8일 한국경제총이 5월 달 매출 100대 기업 중 66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조사'를 한 결과, 27.3%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 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택근무 시행을 중단한 기업 77.8%는 4월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맞춰 사무실 출근으로 바꿨음.
  -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직원의 재택근무 선호 때문이라는 응답은 20.8%였음.
  - 정부의 재택근무 장려 지속 때문이라는 응답은 16.7%였고, 기업 48.5%만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활용·확산할 것이라고 응답했음.
  - 재택근무 방식도 필요인원 선별 또는 신청(33.3%), 부서별 자율 운영(25%) 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교대조를 편성하거나 출근비율을 정하는 방식의 교대 순환형은 지난해 58.7%에서 올해는 27.1%로 크게 줄었음.
  -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생산성이 정상근무에 대비해 평균 79% 수준이라고 평가했음.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생산성을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는 40.9%에서 올해 29%로 감소한 반면 90% 미만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59.1%에서 올해 71%로 증가했음.

#### ◆ 청년 구직자 73% “중소기업 취업도 생각 중”

- 6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5월 19~25일 만 18~34세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4%라고 밝혔음.
- 응답자 중 연령이 높을수록(30대 이상 79.4%), 근로경험이 있을수록(82.8%)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로는 '취업 여건을 고려해서 희망 직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함'(47.4%)을 꼽았음.
- 청년구직자의 61.8%는 현재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응답(38.2%)한 구직자의 1.6배에 달했음.
- 채용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미숙련 면접관이 심사하는 등 '면접 방식의 불합리함'(46.3%)을 꼽았음.
- 어렵다고 느끼는 채용 절차 단계로 '대면 면접'(37.7%)을 꼽았으며, '서류단계'(33.6%), '필기시험'(16.3%)이 뒤를 이었음.
- 선택한 채용 절차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회사마다 방식이 상이해서'(39.3%) 채용 절차가 어렵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음.

- 한편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는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33.2%)을 꼽았으며, '임금만족도'(22.2%), '건강한 조직문화, 사내 분위기'(15.0%)가 그 뒤를 이었음.
- 구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기업 정보 입수'(29.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조직 문화, 기업 안정성, 퇴사율, 근로조건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